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76 발의연월일: 2024. 11. 12.

발 의 자:신정훈·박정현·박용갑

정준호 • 이해식 • 채현일

한민수 · 김기표 · 차지호

박 정・임미애・부승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재원으로 하고,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총액의 100분의 20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규모는 2015년 도입 이후 신장성이 거의 없이 정체되다가 올해는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있어 이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규모도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국민들의 소방 및 안전 투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100분의 45에서 1만분의 7,799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조·제9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개별소비세"로,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하는 금액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만분의 1,058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00분의 45"를 "1만분의 7,799"로 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100분의 45"를 "1만분의 7,799"로 한다.

제9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 ②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만분의 2,50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소방안전 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 1. 소방 분야: 100분의 50
- 2. 안전 분야: 100분의 50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1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	
과하는 <u>개별소비세 총액의 1</u>	<u>개별소비세</u>
<u>00분의 45</u>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	
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	
액의 1만분의 1,924에 <u>해당하</u>	<u>해당하</u>
는 금액	는 금액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만분의
	<u>1,058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u>
	<u>산한 금액</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3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u>100분의 45</u> 에 해당하	<u>1만분의 7,799</u>
는 금액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예산 계상) ①・② (생	제5조(예산 계상) ①・② (현행과
략)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	③

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 야 한다.

- 1. 2. (생략)
-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 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 본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 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의 소방 인력, 소방 및 안전시 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

.
1. • 2. (현행과 같음)
3
<u>1</u> 만분의 7,799
세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
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
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
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만
분의 2,50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
당하여야 한다. 그 외의 부분
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
율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방 분야: 100분의 50
2. 안전 분야: 100분의 50
<u>③</u>

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 <u><단서 삭제></u>